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업무내용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등록기준

2026.01.02 개정 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2. 기술능력

2인 해당분야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초급 이상의 기술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분야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본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 자	
기술사	토목시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지질 및 지반
기사	토목, 응용지질, 지하수
산업기사	토목, 굴착, 지하수
기능사	굴착, 시추,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3. 시설·장비

사무실	장비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가. 착정 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착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정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사업자로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상 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20일 이내 소요